

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4.7.29>

문서번호						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서			
구		분		변 경 내 용		변경일 자		변경사유	
명		칭							
사무소의 소재지				전화번호					
대표자	성 명	(한자:)		생년월일 (성별)					
	주 소			전화번호					
발 기 의 취 지									
인 영	회 인								
	대 표 자 직 인								
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신고사항 중 위와 같이 변경이 있었기에 「정당법」 제7조제4항 및 「정당사무관리규칙」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○○당(가칭)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									
※구비서류 1. 발기취지문 부 2. 인영서 부 3.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 4. 회의록 사본 1부 5.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6. 대표자의 이력서 1부									
주 1. 변경신고는 신고된 대표자가 합니다. 다만, 대표자의 사망·궐위·소재 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할 수 있습니다. 2. “변경내용”란에는 기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사항만 기재하고, 구 비서류는 변경내용에 해당될 경우에 한합니다. 3. 발기취지문 및 인영서는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는 수량을 제출하여야 하며, 인영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<별지 제2호>에 의합니다. 4. 회의록에는 기록자·확인자의 서명·날인이 있어야 하며,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“원본대조필”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.									